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수면양식수산물 공동위판장 지정 근거 마련〉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7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내수면양식수산물 공동위판장 지정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2. 제안일: 2025. 7. 18.

3. 회부일: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Ⅲ. 검토의견

1. 내수면양식수산물 공동위판장 지정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수면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위판장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수면양식수산물은 공동위판장에서만 거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의2·제60조제2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수산물공동위판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을 통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위판장”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② 공동위판장은 한 곳으로 하되,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 ----- ----- ----- ----- ----- -----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수면양식수산물은 공동위판장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1. (생략)	제60조(벌칙) ----- ----- ----- -----.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1. (현행과 같음) 2. -----위판장 또는 공동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이나 내수면양식수산물-----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생산자(단체)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개설 절차를 두고(§10),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되도록 규율하고 있음(§13조의2).

개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시장 질서가 불안정한 내수면 양식 수산물(뱀장어)에 대해서는 공동위판장 1개소에서만 매매·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물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수산 정책 수립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수면양식수산물은 소규모 양식장과 중간상인 간 개별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 질서가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어,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뱀장어)에 대해서는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위판장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뱀장어양식수협(전라남도영암군), 고창군수협, 영광군수협에서만 뱀장어에 대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4,494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만 4,173톤의 물량이 위판장에서 매매·거래되었음.

[표] 수협조합별 뱀장어 위판 현황

(단위: 톤, 억원)

조 합 명	민물장어양식수협 (전남영암군)		고창군수협(뱀장어)		영광군수협(뱀장어)		소 계	
구 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22년 (비중)	11,486 (72.6%)	3,214 (72.8%)	3,890 (24.6%)	1,078 (24.4%)	435 (2.8%)	125 (2.8%)	15,811	4,417
‘23년 (비중)	10,483 (75.4%)	3,270 (75.5%)	2,500 (18.0%)	770 (17.8%)	924 (6.6%)	289 (6.7%)	13,907	4,329
‘24년 (비중)	9,266 (65.4%)	2,966 (66.0%)	3,527 (24.9%)	1,102 (24.5%)	1,380 (9.7%)	426 (9.5%)	14,173	4,494
‘25년 上 (비중)	5,762 (81.8%)	1,669 (81.7%)	1,121 (15.9%)	327 (16.0%)	157 (2.2%)	47 (2.3%)	7,040	2,043
조 합 명	민물장어양식수협 (전남영암군)		고창군수협(뱀장어)		영광군수협(뱀장어)		소 계	
위판수수료율	0.0%		0.3%		0.3%		-	
중도매인	45명		20명		6명		71명	
생산자	380명		376명		39명		795명	

자료: 해양수산부

□ 현재 뱀장어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의무위판장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위판장이 전라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3개소에 한정됨에 따라 전체 생산량의 약 13%는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비계통 출하물량으로, 대부분 식당에서의 자가소비 및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소비되고 있음.

[표] 뱀장어 지역별 양식장·생산량 현황(2024)

구 분	뱀장어			
	물량(톤)	(%)	금액(억원)	양식장수(개)
합 계	15,978	100	5,082	614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2	0.0	1	1
인천광역시	309	1.9	99	8
광주광역시	8	0.0	3	1 (제주)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1
경기도	375	2.3	113	40
강원특별자치도	137	0.9	46	10
충청북도	65	0.4	23	10
충청남도	256	1.6	87	22
전북특별자치도	3,818	23.9	1,215	136
전라남도	10,568	66.1	3,363	353
경상북도	84	0.5	29	10
경상남도	355	2.2	104	22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개소의 공동위판장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뱀장어)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모든 생산자가 공동위판장으로 출하할 경우, 거래 물량집중을 통한 가격 교섭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물류·운송비용의 상승 및 운영 부담의 집중 등 부정적 효과 발생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므로, 양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위판장에 독점적 거래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생산자 출하선택권 제한, 수산물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수산물 중 업종별 수산물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수산물은 민물장어가 유일하여 다른 내수면양식수산물에 대한 공동위판장의 개설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24년 기준 뱀장어의 위판물량은 민물장어양식수협(65.4%), 고창군수협(24.9%), 영광군수협(9.7%)의 3개 수협이 분담하여 실시하는 체제가 정착되어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간 의견합의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

문 의 처

02)6788-5422

1) 고창군수협 및 영광군수협, 충청·전북권조합장협의회(수협)은 업종별수협에 의한 위판 독점은 사매매 유발, 가격결정 투명성 저하, 어업인 선택권 침해, 유통효율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매시장법인협회 및 중도매인협회는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저하, 가격담합 문제를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반면, 업종별수협(굴수하식·멍게수하식 수협)은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면서, '내수면양식업'에 한정되어 있는 개정안 내용을 '양식업'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수협중앙회는 관련 조합간 합의 없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음.

참 고

내수면양식수산물 생산량 및 단체 현황

□ 내수면양식수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 톤)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3,968	42,672	48,777	42,877	40,547
동자개류	389	417	407	174	222
메기	3,951	3,783	3,909	2,528	3,090
미꾸라지류	690	678	690	668	698
틸라피아(민물돔)	197	184	197	214	189
뱀장어	9,788	15,772	18,131	16,090	16,058
붕어	2,489	2,907	3,425	2,047	2,216
송어류	2,414	2,483	3,043	2,757	2,293
잉어	1,278	1,477	1,798	867	816
향어	1,678	2,028	1,847	1,737	1,912
논우렁이	38	44	9	-	-
왕우렁이	6,035	8,011	10,297	10,085	7,904
기타	5,021	4,888	5,024	5,710	5,149

□ 내수면양식수산물 단체 현황

단체명	업종별수협 존재 여부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X
(사)한국송어양식협회	X
(사)전국내수면향어양식연합회	X
(사)한국자라생산자협회	X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X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O
(사)한국다슬기양식유통생산자협회	X
(사)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	X
(사)전국내수면미꾸라지양식생산자협회	X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X